

의안번호	2210489
의 퇴 인	이인선 의원
회 답 일	2025. 5. 15.
추 계 번호	25F28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적용기한 5년 연장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학교 및 사회복지법인 등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는 경우 법인세수는 2027년 870억 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4,350억 원 (연평균 87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동 특례조항은 5년간 적용되므로 세수효과는 2027~2031년까지 발생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 법인세, 2027~2031년

(단위: 억 원)

	2027	2028	2029	2030	2031	누적	연평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적용기한 5년 연장 (안 제74조)	870	870	870	870	870	4,350	870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74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 학교 및 사회복지법인 등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특례의 적용기한 5년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 (개정안) 2030.12.31.	

III.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
1	안 제74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 부칙에 따라 개정안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전제하며, 세수효과는 신고 및 납부시기에 따라 2027년부터 발생
- 조세특례제한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연평균 감면실적이 향후에도 일정하게 발생한다고 가정하여 세수효과를 추계
 - 과거 10년('14~'23)간 법인세 신고기준 조세특례제한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감면실적에서 특이치를 제외한 연평균 감면실적 산출
 - 향후 신규 발생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액은 연평균 감면실적만큼 일정하게 발생한다고 가정

3. 상세 추계내역

1) 제도 개요 및 실적

- (제도개요) 학교 및 사회복지법인 등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2호¹⁾가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
 - (개정연혁) 1998.12.28. 「조세감면규제법」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법인세법」 제2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에 의거 해당 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규정이 확대·신설되고 적용기한이 연장됨
 - － 1998.12.28. 전부개정: 5년 단위의 한시법으로 운용한 조세감면규제법 적용시한이 1998.12.31. 만료됨에 따라 모든 「조세특별규정」을 포괄하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환하여, 일반 법률에 의한 조세감면사항과 개별 세법에 의한 조세특별사항을 포괄하여 규정하고 감면조문별 그 적용시한을 설정
 - － 2010.12.27. 일부개정: 같은 법 제73조제1항제15호 각 목의 국제행사조직위원회를 같은 법 제74조제1항제7호 각 목으로 신설하여 규정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시·군 소재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범위 확대

1) 「법인세법」 제2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제1항제2호
그 밖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2022.12.31. 일부개정: 2004년~2022년까지 적용기한 재연장 및 대상 변경, 같은 법 제74조제1항제7호 각 목의 조직위원회를 삭제하고 행정규칙에 위임
- (현행규정)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규정에 추가하여 해당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과 인구수가 20만 명 이하인 시·군지역 등에서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
-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 (개정안) 2030.12.31.
-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표 2]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 적용대상

		특례 적용대상
제1항	제1호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서울대학교 및 발전기금, 인천대학교 및 발전기금
	제2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제3호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국립암센터, 지방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대한적십자가 운영하는 병원,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8조의2에 따라 설립한 의료기술협력단
	제4호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한 도서관을 운영하는 법인
	제5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운영하는 법인
	제6호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지방문화원, 예술의 전당, 대학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그 밖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문화예술 단체 또는 체육단체
	제7호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조직위원회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한 조직위원회: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 조직위원회,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기획재정부고시 제2022-27호)
	제8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해당 과세연도 고유목적 사업이나 법인세법상 일반기부금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8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한 법인
	제9호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제4항		인구수가 20만 명 이하인 시·군지역 등 ²⁾ 에서 의원급 및 병원급 의료기관 ³⁾ 을 개설하여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

-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0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제5항
 1. 인구수가 30만 명 이하인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두는 행정시를 포함)·군지역
 2.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또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이 소재하고 있지 아니한 지역
 3)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 제2항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 (감면실적) 과거 10년('14~'23)간 법인세 신고기준 조세특례제한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감면실적은 2020년 1,538억 원, 2021년 1,675억 원을 제외하면 일정 범위 내에서 변동

[표 3] 조세특례제한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감면실적: 2014~2023년
(단위: 억 원, %)

	2014	2015	2016	2017	2018
법인세	947	732 (△22.7)	798 (9.0)	819 (2.6)	815 (△0.5)
	2019	2020	2021	2022	2023
법인세	931 (14.2)	1,538 (65.2)	1,675 (8.9)	823 (△50.9)	1,094 (32.9)

주: p는 전망, () 안은 법인세 감면실적의 전년 대비 증감을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신고연도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추계방법

- 최근 5년('19~'23)간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 중 금융보험업, 서비스업, 보건업, 기타업종을 조세특례제한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가정하여 변동 요인을 분석
- 조세특례제한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으로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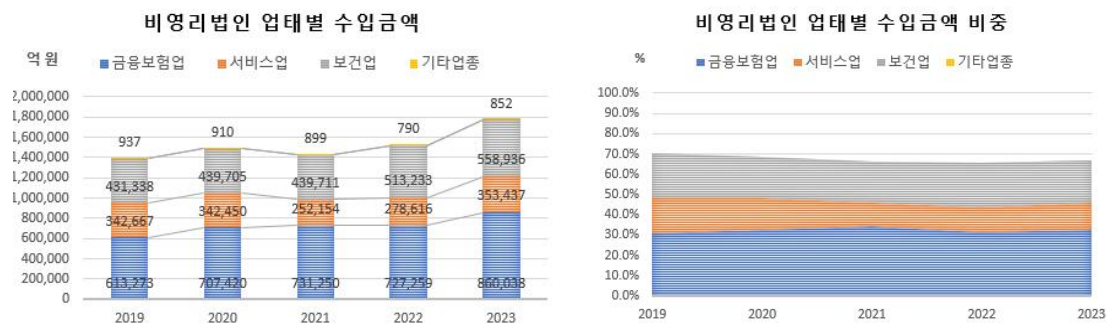
법인 중 학교, 도서관, 사회복지법인은 서비스업, 대학병원 등은 보건업, 공무원
연금공단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금융보험업, 그 외 법인은 기타업종으로 구분

- 상기 4개 업태의 합계는 전체 비영리법인 수입금액의 평균 67.4% 수준으로,
금융보험업 32.3%, 서비스업 13.9%, 보건업 21.2%, 기타업종은 0%에 해당

[표 4]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 수입금액 신고현황: 2019~2023년

(단위: 억 원, %)

	2019	2020	2021	2022	2023	비중
비영리법인	1,980,126	2,177,863	2,147,055	2,311,722	2,646,537	100
- 금융보험업	613,273	707,420	731,250	727,259	860,038	32.3
- 서비스업	342,667	342,450	252,154	278,616	353,437	13.9
- 보건업	431,338	439,705	439,711	513,233	558,936	21.2
- 기타업종	937	910	899	790	852	0
4개 업태 합계	1,388,215	1,490,485	1,424,014	1,519,898	1,773,263	6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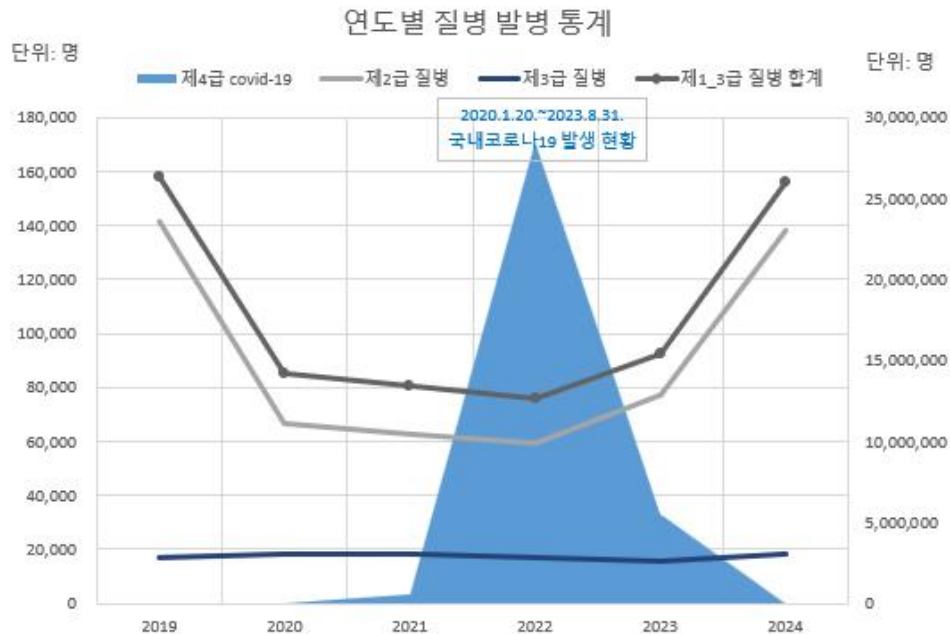
자료: 국세통계포털, 「비영리법인 법인세 주요항목 신고현황」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금융보험업의 2021~2022년 신고기준 수입금액은 공무원연금공단의 2020~2021년 토지 등 양도소득 발생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
- 보건업의 수입금액은 감염병 발병에 따라 변화한다고 보아 신고기준 2020년은 2018~2019년 법정 제2급 질병과 신고기준 2022~2023년은 2021~2022년 국내 코로나19 발병 급등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
 - 과거 2000년, 2014년, 2020년 의료과업에 따른 보건업의 수입금액 영향은 미미

[표 5] 법정 감염병 발병 현황: 2019~2024년

(단위: 명)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제1급	1	1	0	0	1	0
제2급	141,058	66,835	62,277	59,064	76,859	138,042
제3급	16,684	18,404	18,023	16,674	15,687	18,075
covid-19	0	60,722	569,943	28,424,349	5,517,540	0
합계	157,743	145,962	650,243	28,500,087	5,610,087	156,117



자료: 감염병포털, 「감염병통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는 과거 10년('14~'23)간 법인세 신고기준 조세 특례제한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연평균 감면실적이 향후에도 일정하게 발생한다고 가정하여 세수효과를 추계
 - 과거 10년('14~'23)간 법인세 신고기준 조세특례제한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에 따른 감면실적 중 특이치를 제외하면 일정 수준으로 변동
 - 2020년 1,538억 원과 2021년 1,675억 원은 특이치로 제외

[표 6] 조세특례제한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감면실적: 2014~2023년
(단위: 억 원)

	'14	'15	'16	'17	'18	'19	'22	'23	연평균
법인세	947	732	798	819	815	931	823	1,094	870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신고연도

3)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학교 및 사회복지법인 등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는 경우 법인세수는

2027년 870억 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4,350억 원
(연평균 87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동 특례조항은 5년간 적용되므로 세수효과는 2027~2031년까지 발생

[표 7]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 법인세, 2027~2031년

(단위: 억 원)

	2027	2028	2029	2030	2031	누적	연평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적용기한 5년 연장 (안 제74조)	870	870	870	870	870	4,350	870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2과	이수인	백경엽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수인	02-6788-4839	suin2025@assembly.go.kr